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정보조직의 지휘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기능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3.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나. 2018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의 정보업무 환경 변화 사항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없음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리공간정보”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로 한다.

7. 국방정보본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
제3조제2항 중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를 “지리공간정보·인간정보·기술정보·계측정보·기호정보”로, ““영상정보 등””을 ““지리공간정보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조의2(업무)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u>	7. <u>국방정보본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u>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군사 관련 <u>지리공간정보</u> 에 관한 업무	11. ----- <u>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기상정보</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u>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u>	② ----- <u>합동참모본부</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u>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u> 등의 정보(이하 “<u>영상정보등</u>”이라 한다)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생략) ③ (생략)	② ----- -----. 1. ----- <u>지리공간정보·인간정보·기술정보·계측정보·기호정보</u> ----- ----- “<u>지리공간정보 등</u>”----- ----- -----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79